# 조선시기 '士族支配體制論'의 새로운 전망

## -16세기 慶尙道 星州地方을 소재로 하여-

金 炫 榮

머 리 말
1. '사족지배체제론'의 배경, 연구성과와 한계
1) '사족지배체제론'의 배경과 연구성과
2) '사족지배체제론'에 대한 반성
2. '사족지배체제론'의 새로운 전망-16세기 경상도 성주지방을 素材로 하여
1) 국가권력과 재지사족
2) 국가권력과 민
맺 음 말

## 머 리 말

15세기 초두로부터 근대적 세계체제로 편입되는 19세기 후반에 걸치는 조선왕조 시기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는 전근대 한국사회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조선시기의 사회에 대한 연구사적인 검토를 통하여 전근대 한국사회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시기의 향촌사회에 대한 근래의 연구를 우리는 '사족지배체제론'으로 포괄할 수 있겠다. 조선시기 향촌사회사 연구성과를 '사족지배체제론'으로 일괄하면 매우 포괄적인 것이 되어 개별 연구자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불만스러운 규정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구의 소재를 향촌사회(혹은 '지역사회')에 두고 조선시기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분히 '사족지배체제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물론 '양반사회론' '양반국가론'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의문이 당장 나올 것이다. '양반사회론'이나 '양반국가론'은 물론 국가권력의 성격을 양반=사족이라고 하는 점에

두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질지는 모르나, 80년대 이후 조선시가 향촌사회사 연구라고 하는 하나의 연구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場인 향촌사회에서의 권력의 지배형태를 검토함으로써 나온 것과는 이론적,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사족지배체제란 사족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라는 의미이다. 김인걸은 사족지배체제를 "관권과의 일정한 타협 위에서 군현단위 및 촌락사회에서 그들의 향권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배기구를 장악하고, 사족들이 관권과의 타협 위에서 吏民을 통제하고 있었던 향촌지배구조"라고 정의하였다.(1) 이러한 구도를 조선말기까지 발전시켜서 수령의 향촌지배를 의식하는 입장에서는 사족지배체제를 '守令-士族 主導 鄕村支配'라고 바꾸어 표현하기도 하였다.(2) 그러나 '사족지배체제'라는 말을 향촌사회에 국한하지 않고 좀더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조선시대 사족 지배를 위한 법률, 제도 및 이데올로기의 총체를 사족지배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족지배체제에 대한 개념 규정이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향촌사회에서 국가권력(수령권)과 사족지배권과의 대립-갈등이라는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림파의 성리학적 향촌지배 이데올로기의 관철과 그러한 이념에 의한 체제 구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제도, 관행 및 이데올로기의 총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선시기의 사족지배체제는 15세기에 성립되어 16, 17세기에 발전하여 18, 19세기에는 변질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족지배체제론의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개관하고 사족지배체제론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이는 사족지배체제론의 새로운 전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사족지배체제론이 가지는 이론적 한계점은 구체적인 향촌단위의 현실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족지배체제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6세기 중반 경상도 성주지방을 소재로 하여 사족지배체제론의 새로운 전망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

(1) 金仁杰, 1991『朝鮮後期 鄕村社會의 變動에 관한 硏究-18·19세기 '鄕權' 擔當層의 變化를 중심으로-』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 高錫珪, 1991『19세기 鄕村支配勢力의 變動과 農民抗爭의 樣相』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 '사족지배체제론'의 배경, 연구성과와 한계

### 1) '사족지배체제론'의 배경과 연구성과

전근대 한국사회에 대한 근대 역사학적 연구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은 전근대 한국사회를 정체적이고 타율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로 파악하였다. 후쿠다·시카타를 비롯한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경제사, 농업사, 사회사, 정치사 등 제반 분야의 역사에서 조선사회의 정체성과 타율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다.

해방 이후 남북한의 역사학자들과 일본의 진보적인 역사학자들은 해방전 식민사학자들의 정체성론, 타율성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남북한의 역사학자들은 한국사를 세계사의 보편성에 반하는 특수성, 정체성론에 입각한 역사인식에 반대하여 한국사도 세계사적 보편적 역사발전과정의 하나로 파악하려 하였다. 이에 있어서 기본적 지침의 역할을 한 것은 스탈린의 '세계사의 기본법칙'이었다. 북한의 역사학자들은 해방 이후 곧바로 일제 식민사관과는 달리 한국사도 '원시공산제-고대노예제-중세봉건제-근대자본제'라고 하는 4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왔다고 전제하고 다만 각 시기의 상한과 하한이 어디이며 각 시기의 기본적 생산양식이 유럽의 역사와는 어떻게 다르고 또 변용되었는가를 논의하였다. 특히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정체성론의 근거가 되는 조선후기 사회에 대하여 그 시기를 퇴영적이고 암울한 역사상으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여, 애써 조선후기 사회의 밝은 면을 찾아내고,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발전된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남한에서는 60년대 후반 이후 경제사, 농업사, 상업사 부분에서 조선후기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맹아의 발생과 발전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일어났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3)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정치사에 대한 왜곡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림파의 조

(3) 李泰鎭 교수는 조선후기 사회사에 대한 연구성과를 사회변동론의 관점에서 정리한 바 있다(「朝鮮後期 兩班社會의 變化-身分制와 鄕村社會 運營構造에 대한 硏究를 중심으로-」『韓國社會發展史論』, 1992년, 一潮閣).

선전기의 역사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부각시켰다. 또한 이 시기 사회사의 실증적인 성과에 힘입어 좀더 구체적으로 향촌사회에서의 자치적인 측면을 검토하였다. 즉 조선후기에 농업기술의 발달, 농민층의 분해,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농업사, 경제사 연구에 힘입어 사회사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였다. 사회사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는 80년대 초반까지 조선사회의 기본적 신분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또한 그보다 먼저 四方博의 대구 호적대장을 이용한 각 신분층의 증감을 밝힌 연구 성과를 재검증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재검증의 결과, 조선후기 각 신분층의 변동, 즉 양반층의 격증, 상민층의 점진적 감소, 노비층의 소멸이라고 하는 통계는 일치하였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시카타와 해방 이후 연구자들이 달랐다.(4)

사족지배체제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호적대장 연구를 통한 사회사 연구의 한계는 조선시대 신분사 이해를 위한 새로운 방법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70년대 이후 鄕規, 鄕約에 대한 田川孝三, 金龍德 교수의 실증적인 연구가 나타나고 조선전기 사림파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 졌다.(5) 李泰鎭 교수는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

(4) 시카타의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신분계급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지켜졌고 사회적 尊卑, 職官의 除授, 國役의 부담 등이 이것에 준하여 배분되었다. 둘째, 그러나 원칙에는 많은 예외가 존재하여, 士類·常民·賤民의 구별은 관념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이고 엄밀히 실제 생활상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알 수 없다. 세째, 봉건적 신분제도의 유지가 완만해져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었고, 따라서 대다수가 향유하는 특권은 특권이 아니게 되고, 한편 담당자가 적어지면 부담은 담당자의 교체를 압박하게 되었다. 네째, 시대의 말기에 이르러 兩班과 賤民과는 사회적 신분을 구별하는 관념상의 상하를 구획하는데 지나지 않게 된다(四方博, 1937「李朝人口에 관한 一硏究」『朝鮮社會經濟史硏究』; 1937「朝鮮에 있어서 大家族制와 同族部落-그 歷史的 觀察의 一試案」『朝鮮』270호; 1938「李朝人口에 관한 身分階級別的 觀察」『朝鮮經濟의 硏究』第3; 1939「大丘戶口帳籍에 就하여」『大邱府史』; 1941「李朝時代의 都市와 農村에 대한 一試論-大丘戶籍의 觀察을 基礎로 하여」『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第12. 이상의 논문들은 모두 四方博의 著作集『朝鮮社會經濟史硏究(中)』(1976, 東京 國書刊行會)에 재수록됨).

(5) 田川孝三, 1972「鄕案에 대하여」『山本博士還曆紀念東洋史論叢』 山川出版社; 1975「鄕憲과 憲目」『鈴木俊先生古稀紀念東洋史論叢』 山川出版社; 1975·76「李朝의 鄕規에 대하여」『朝鮮學報』76·78·81집.

운동, 향약 운동을 통한 성리학적 향촌질서의 확립과 조선전기 사족지배체제 성립의 의의를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6) 한편 고려시대 土姓 연구를 축적해 온 李樹健 교수는 고려 토성의 사족과 이족으로의 분화과정을 실증하였다. 이로서 15세기 토성사족의 재지사족으로의 발전, 중앙 정계에의 사림파의 진출과 향촌지배 방법으로서의 留鄕所가 주목되었다.(7)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수렴하면서 80년대 이후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는 신분관계의 실현의 場인 향촌사회 속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되고, 말하자면 향촌사회를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즉 이러한 조선전기사에 대한 이해와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조선후기에 대한 연구성과의 축적은 조선후기 향촌사회에 대한 해석에도 관심을 촉발시킨 것이다. 金仁杰 교수는 이러한 사족지배체제가 18세기에 들어와서 동요되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에는 국가적으로 官主導의 향촌정책이 실시되고 이에 따라 吏鄕層의 대두를 주목하였다. 나아가 高錫珪 교수는 19세기 사족지배체제가 동요되고 守令-吏鄕支配構造가 성립되었다고 이해하였다. 두 연구자의 성과를 연속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면 조선후기의 향촌사회사는 18세기에 사족지배체제가 흔들리고 국가의 관주도 향촌정책에 따라 사족은 향권으로부터 점차 배제되기 시작하며 19세기에 들어서면 '수령-이향지배체제'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8세기 초반의 평안도농민전쟁, 후반의 삼남지방의 농민항쟁,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의 해석을 수령-이향수탈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사적 맥락 속에서 조선시기를 대표하는 지배체제를 무엇이라고 할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족지배체제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족지배체제와 관련된 연구성과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

---

金龍德, 1978『鄕廳硏究』한국연구원.

(6) 李泰鎭, 1972·73「士林派의 留鄕所復立運動-조선초기 성리학정착의 사회적 배경」『震檀學報』34·35집; 1976「朝鮮前期의 鄕村秩序」『東亞文化』13집; 1983「士林派의 鄕約普及運動-16세기의 경제변동과 관련하여」『韓國文化』4집(이상 모두 1986『韓國社會硏究-농업기술발달과 사회변동』지식산업사에 수록됨).

(7) 李樹健, 1975「'土姓' 硏究(1)」『東洋文化』16집; 1979『嶺南士林派의 形成』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은 연구성과들을 볼 수 있는데, 크게 셋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16세기 사족지배체제의 운영과정 즉 京在所-留鄕所 체제의 운영에 대한 연구(李泰鎭, 李樹健),[8] 둘째, 儒鄕分岐의 문제와 유향분기의 진전에 따른 각 지역적 사족지배체제의 성격과 사족지배의 유형론(金仁杰, 金炫榮),[9] 셋째, 사족지배체제의 전개과정과 향권을 둘러싼 갈등, 향촌권력구조의 변모에 대한 연구 등(수령-이향지배체제=韓相權, 高錫珪, 鄕戰-사례 다양함, 分洞-李海濬, 鄭震英) 다양한 성과들이 나왔다.[10]

이러한 조선시대사 이해는 그동안 停滯的으로 보아왔던 조선후기사를 변동과 발전의 과정으로 파악한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업사, 경제사, 상업사 등 자본주의 맹아의 발견에 집중하였던 내재적 발전론에 발맞추어 사회사에서도 사회조직과 사회변동에 주목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와 조선시대의 지역사회를 좀더 긍정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는 일찍이 일제시대부터 있었다.

식민지시대에 방대한 우리 국학에 대한 저술을 남기고 우리 역사를 발전적, 민주적인 시각에서 정리한 安廓(1886~1946)의 『朝鮮文明史』[11]에서는 조선시대의 鄕會와 村會를 우리나라 자치제 발달사에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鄕會를 "自治로서 人民이 서로 모여 행정

---

(8) 李泰鎭, 1972·73「앞의 논문」
李樹健, 1989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9) 金仁杰, 1983「조선후기 鄕案의 성격변화와 在地士族」『金哲埈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90「17·18세기 향촌사회 신분구조변동과 '儒·鄕'」『韓國文化』 11집.
金炫榮, 1993『朝鮮後期 南原地方 士族의 鄕村支配에 관한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0) 李海濬, 1982「17세기초 晋州地方의 里坊再編과 士族」『奎章閣』 6집; 1985「조선후기 晋州地方 儒戶의 實態-1832년 晋州鄕校修理記錄의 분석」『震壇學報』 60집.
고석규, 1989「19세기 전반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성격」『外大史學』 2집.
고석규·한상권, 1990「18·19세기 봉건모순의 심화와 '민'의 성장」『역사와 현실』 3집.
鄭震英, 1991「조선후기 同姓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韓國史論』 21집(국사편찬위원회).

(11) 1923년 1월 匯東書館 간행. 정확히 말하면 『朝鮮文明史(5) —名 朝鮮政治史』.

상 부정을 탄핵하며 또는 자치사무 및 그 생활에 대하여 議論을 여는 것인데 이는 중앙정부의 儒會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座首가 보통 村民의 대표를 소집하여 鄕廳에 여는 것이라"는 安廓의 鄕會에 대한 설명은 通時代的으로 다 적합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 조선 중기의 향회는 대체로 양반사족으로 구성되고, 후기 이후로 비로소 그가 파악한 것과 유사한 구성의 향회가 지역에 따라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적, 유형적 파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대로의 지향의 논리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12)

金錫亨의 『조선시대 농민의 계급구성』과 『양반론』도 역시 '세계사의 기본법칙'에 입각하여 북한에서의 중세의 토지소유관계의 성격에 관한 논쟁의 결과 작성된 것이었다. 북한에서의 토지소유관계에 대한 논쟁은 1955년에 시작되어 195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계급구성의 물적 토대인 토지소유관계가 법적, 관습적으로 표현된 것이 신분제라고 파악하는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작성된 그의 신분론은 노비, 양인, 양반이라는 일제하에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구분된 전통적 신분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러한 제 신분의 기원을 삼국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미세한 실증의 분야에 들어가서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고, 또 자신의 기본 구상에 사료들을 꿰어맞추려고 했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말기까지 봉건시대로 보는 시대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김석형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들도 봉건시대 2000년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시대의 반 이상을 봉건시대로 간주하여 동일한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석형의 우리

(12) 李泰鎭, 1984 「安廓의 生涯와 國學世界」 『歷史와 人間의 對應』(高柄翊先生回甲記念史學論叢), 한울: 1989.7 「한국의 역사가-안확」 『한국사시민강좌』 5집 158쪽: 崔元植, 1981.8 「安自山의 國學」 『심상』 1981년 8월호(『민족문학의 논리』 창비사, 1986년에 재수록: 韓永愚, 1984 「韓國近代歷史學과 朝鮮時代史 理解-安廓의 朝鮮文明史」 『인문과학의 새로운 방향』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

나라 중세사에 대한 논의는 장기 2000년 중세 봉건제론이며, 따라서 봉건적 토지소유, 봉건적 신분제의 증명에 초점이 두어진 것이다.(13)

남한에서의 연구도 기본적으로는 '세계사의 기본법칙'의 큰 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봉건제를 당연한 전제로 간주하고 봉건적 지주제와 신분제를 증명하려는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할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그러한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연구성과들을 하나의 결실로 갈무리하고 새로운 광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선입견이 없는 조선시기의 국가의 성격과 지방지배의 방식을 이해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2) '사족지배체제론'에 대한 반성

그런데 최근에는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내재적 발전론은 스탈린의 '세계사의 기본법칙'이라고 하는 낡은 일원적 발전론, 유럽중심사관, 교조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14) 우리의 반성의 초점은 조선후기가 발전하고 있고 변동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전제를 버려야 하는데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근대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자립, 대항, 갈등을 통하여 일찍부터 專制國家가 출현하였으며 전국을 일원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군사력, 행정제도, 통합의 대상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거친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회질서의 원천은 최종적으로 국가였다. 때문에 전근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국가를 外在化한다면, 양반사족이 왜 지

(13) 金錫亨, 1957『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신서원 재편집본 참고)

(14) 197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明淸時代史 연구자들도 전통적 틀의 이완,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조류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縣 이하의 재지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계급관계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질서를 해명하려고 하는 소위 '地域社會論'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사의 기본법칙에서 연역된 중국봉건제의 실재를 부정하고 소경영생산양식의 발전(소농경영의 자립화, 부농경영의 성장)에 주목한 중국사연구회의 논의이다. 전자는 사회사, 후자는 경제사(농업사나 화폐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지역사회론에 대해서는『歷史評論』570호(1997.10), 580호(1998.8) 및 582호(1998.10)의 특집 참조. 전제국가론에 대해서는 足立啓二, 1998『專制國家史論』(東京:木白書房) 참조).

역의 엘리트일 수 있는가가 해명이 안될 것이다.

하민들이 양반을 보호자로서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기준은 토지소유나 국가권력과의 연결 그 자체가 아니고 지방사회에 있어서 실제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호능력은 양반의 밑에 많은 하민들이 결집하여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도 힘은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향촌사회사 연구에 입각한 사족지배체제론이 결실을 거두려면, 먼저 在地社會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존재방식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조선 국가는 극히 강한 중앙 집권의 골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통치제도는 정규의 지방관 이외에 방대한 鄕任, 鄕吏, 軍校, 面里任 등의 비정규요원을 포함하고 있고, 그들이야말로 재지에 있어서 국가지배의 대행자들이다.

재지지식인이 지방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수단은 향임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물론 司馬所, 留鄕所를 통하여 간접적인 관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족조직의 강약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들의 결속력과 힘은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조선 국가에서 지역엘리트는 전제국가의 지방지배를 地域에서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지방행정에 깊이 관여하는 인맥의 網을 짜는 것에 의해 비로소 그들의 우위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전근대 한국의 지식인의 究極의 목표는 科擧에 급제하여 관료조직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송준호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의 하나는 조선시대 양반의 속성이 富가 아니라 權威와 威信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근대의 관료제에서는 뷰로크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단적으로 표시하듯이 지배의 권력은 관료 그 사람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役職 및 그 기구로서의 관청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역엘리트는 地方官이나 中央政界와의 연결고리를 그 존재기반으로 하고 있다. 중국이나 한국의 지역사회는 강력한 중앙의 국가를 전제로 성립하고 있고 국가권력을 매개로 하지 않는 자율적 사회질서는 취약하였다. 예를 들면 자율적인 향약의 실시에 있어서도 그 실질적인 시행을 담보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의 인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통치제도의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불가결하다.[15]

## 2. '사족지배체제론'의 새로운 전망-16세기 경상도 성주지방을 소재로 하여

장기, 거시이론을 둘러싼 조선시대사에 대한 논의는 일단 접어두고, 이제 지역사회론의 관점에서 조선사회를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국가권력의 실태를 이해하여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그 집행기구인 守令-留鄕所-鄕吏-面任과 같은 地域支配機構나 收取機構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족의 지방지배력은 어떠한 권력과 위신에 기초하고 있는가 또는 사족은 어떻게 국가권력에 유착해 있는가 하는 것에도 염두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때 우리는 그러한 권력과 위신을 창출해내는 원천으로서 중앙권력과 관계를 가지는 官職, 生員·進士·文科 등 과거에의 합격, 留鄕所·司馬所·종족조직(宗會, 門中) 등의 사회조직에의 참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국가권력과 여러 사회권력들이 부딪치는 場인 향촌사회에서 이들 제 권력은 어떻게 서로 갈등·타협을 해가면서 새로운 권력기구·조직을 창출해나가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셋째로, 사족의 재지사회에 있어서의 권력접근 방식과 강도의 변화 혹은 사족들의 향촌 권력으로부터의 이탈 등의 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6, 17세기 유향소, 향회와 18, 19세기의 향소, 향회의 성격은 같지 않다고 생각

(15) 일본 학계의 明淸史 연구에서의 지역사회론은 '지역사회' '지방사회' '재지사회' 등 個人들이 만나 사회관계를 만들고, 그것이 상호 접촉을 반복하면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권력·지배·질서 등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워지든 사회를 하나의 결집된 사회로서 응집시켜 가는 통합에의 힘(혹은 반통합에의 저항)이 작용하는 場의 존재방식에 주목하는 하나의 조류이다. 즉 지역이나 사회를 고정적인 틀을 가진 불변의 相으로서가 아니라, 부단히 생성하고 인지되는 것에 의해 성립하고 상황에 응하여 변용하여 가는 '動態'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지향성 내지 전략이 지역사회론이다. 여러 가지 개체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場=局部를 주시하는 것에 의해 場에 공유되어 있는 룰을 해독하고 그러한 기층 내지 底部로부터 강렬한 보편주의에의 지향에 의해 통합되어 온 거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전체 세계를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론으로부터 우리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앞의 『歷史評論』 580호 특집 참조).

한다. 시기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이다.

이제 16세기 중반의 향촌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문건의 『默齋日記』의 1551~52년 사이의 기사를 통하여 조선시대의 국가권력과 재지사족 그리고 民의 관계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默齋日記』는 默齋 李文楗(1494~1567)의 일기로서 30여년간에 걸쳐 서술되어 있다. 중간에 결락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일기로서 그리고 성주 읍내에 거주하면서 목사와 판관 등 수령의 동향, 중앙관의 출입, 생원 진사 품관 좌수 별감 등 향소들의 동향이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유배온 처지이긴 하지만 당시 성주 인근 지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로비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문건을 통하여 갖가지 부역, 군역 등에 대한 청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시의 성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향촌사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문건의 『묵재일기』는 이문건이 성주 읍내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직접 겪고 보고 들은 기사들이기 때문에 16세기 경상도 성주지방을 소재를 당시의 국가권력과 재지사족, 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의 우리의 조선시기 사족지배체제에 대한 이해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망을 가질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 1) 국가권력과 재지사족

16세기의 星州牧은 直村과 八莒, 花園, 加利 등 3개의 屬縣으로 구성되었다. 直村과 屬縣은 牧使와 判官, 그리고 향리들의 분담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여기에는 좌수, 별감 등 留鄕所와 屬縣의 경우에는 監官이 수령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묵재일기』에 나타난 16세기 중반의 성주지방의 사정을 우리는

〈ⓐ監司/都事/御史 ↔ ⓑ牧使/判官/敎授(鄕吏/官奴) ↔ ⓒ留鄕所/司馬所/校生 및 개별 士族 ↔ ⓓ常民/奴婢〉

등 몇 개의 관련 속에 파악할 수 있다. ⓐ와 ⓑ의 관계는 목사, 판관, 교수 등 중앙의 임명을 받은 지방관들이 중앙에 의하여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관계이다. 조선 전기에는 監司와 都事가 1년을 임기로 하여 상시적으로 全道를 巡行하였다. 또한 軍籍이나 災傷 등과 같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사와 경차관이 파견되었다. ⓑ와 ⓒ의 관계는 수령의 지방통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데, 이들의 관계는 협조적일 수도 있고 대립적일 수도 있다. 국가의 지방지배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와 ⓒ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하나하나의 戶,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구를 모두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유동할 염려가 없는 토지를 중심으로 호 단위의 지배, 주비(矣) 단위의 지배를 시행하고 있었다. 즉 ⓑⓒⓓ의 관계에서 볼 때 戶役=貢物, 力役=干尺, 還上統, 軍役, 田稅 등 제반 수취를 하는 기본 단위는 戶와 주비였다.

먼저 〈ⓐ와 ⓑ의 관계〉를 보자. 관권에 대한 중앙권력의 견제는 監司·都事·御史·敬差官 등의 상시적인 巡行과 수시적인 파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감사와 도사는 1년을 단위로 교체되지만 상시 관내를 순행하면서 수령의 능력을 평가하고 수령을 考課하여 黜陟하였다. 어사와 경차관은 軍籍, 災傷 등의 조사와 진휼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시로 파견되어 수령을 지휘, 감독하였다. 감사의 考課와 褒貶에 따라 수령이 교체되기도 하고 어사의 狀啓로 바로 수령이 파직되기도 하였다. 이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배기구 말단에 대한 중앙의 강력한 통제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중앙관에 의한 지방관의 강력한 통제는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지방관에 상당한 권력을 위임하고 있으면서도 상시적으로 지방관을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심지어는 감사, 도사, 어사, 경차관 4명이 일시에 성주 한 고을에 머물기도 하였다.(52/12/11 『묵재일기』 1552년 12월 11일자 기사. 이하 같음) 『묵재일기』에서 1551~1552년 사이의 경차관과 어사에 관련된 기사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① 〈敬差官〉에 관한 기사

1551년

○災傷敬差官金希參入州云, 伴問, 又送租二石, 稱念紙可謂厚也.(9/2) 재상경차관 김희참[16]이 관아에 들어와서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또 벼 두 섬을 보냈다. 칭념하는

것이 후하다고 하겠다.

○左道災傷敬差官韓沃到州看審云. 좌도재상경차관 한옥이 관아에 도착하여 간심을 한다고 한다.(9/4)

○韓敬差送中房問之, 遺米太各一石, 因其人聞裵生員妻氏無恙云, 以言謝送米太之意.(10/8) 한경차관이 중방을 보내어 문안하고 쌀과 콩 각 한 섬을 보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배생원의 처가 아프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다. 말로 쌀과 콩을 보낸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二道出八莒, 見金敬差官云.(10/23) 판관이 팔거에 가서 김경차관을 보았다고 한다.

1552년

○栗木敬差官南高禧入州云.(1/7) 율목경차관 남고희가 관아에 들어왔다.

○敬差官向高靈云.(1/8) 경차관이 고령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軍籍敬差官李壽鐵入州云.(12/10) 군적경차관 이수철(字 剛伯, 본관은 全州)이 관아에 들어왔다고 한다.

○監司・都事・御史・敬差散(官의 誤字?)四員留州云. 감사, 도사, 어사, 경차관 4원이 관아에 머문다고 한다.(12/11)

○李德沃來言, 前日考講差使員到高靈時, 爲同壻入代講現捉, 傳請差員前不報事, 得圖, 而軍籍敬差官入高靈問曰, 儒生不通者幾人, 則色書員對曰不通者十, 代講者一也, 一者吾也, 反出於此, 不意如是也, 敬差官令同壻爲羅匠於高靈, 終定水平, 通關星州以某爲羅匠終定軍云云, 牧使推捉入來, 請勿逐日立役事, 告圖云云, 卽去.(12/19) 이덕옥이 와서 말하기를, "전날 고강차사원이 고령에 도착하였을 때, 동서를 위해 들어가 대강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차원에게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그렇게 되었지만, 군적경차관이 고령에 들어와 묻기를, '유생 중에 고강에 불통한 자가 몇 명인가?'하고 물으니, 담당 서원이 대답하기를, '불통자가 10명이고 대강자가 1명입니다'라고 하였는데,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도리어 여기에서 나오니 뜻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경차관이 동서를 고령의 나장으로 하였다가 끝내는 수군에 충정하였고, 성주에 관문을 보내어 '아무개를 나장으로 정하였다가 군역에 충정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가 잡아 들이는데, 매일 입역하게 하지 않도록 도모해주십시요"하고 바로 갔다.

이상 경차관에 관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차관은 재상, 율목, 군적 등 각각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파견되었다. 재상경차관은 貢法에 따라 田分과 年分을 等第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이다. 재상경차관

(16) 재상경차관 김희참은 성주 출신으로 東岡 金宇顒(1540~1603)의 父이다. 字는 師魯 號는 七峯이다.

으로 파견된 김희참은 원래 성주 출신으로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율목은 사당의 練主로 쓰는 것인데, 이에 쓸 밤나무를 구하기 위해 임시로 차출된 경차관으로 생각된다. 군적경차관은 명칭 그대로 군정을 차출하여 군적을 작성하는 경차관이다. 이처럼 경차관은 수시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파견되었고, 이들은 몇 개의 고을을 돌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하였다.

다음은 어사에 관한 기사이다. 어사에 관한 기사는 경차관에 관한 기사보다 많다. 어사의 명목도 여러 가지였는데, 1551년 4월에 황준량이 수행한 것은 감군어사였고, 8월에는 다시 암행어사로 내려왔다. 8월 초에는 암행어사 황준량과 감군어사 김홍도가 동시에 성주에 머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암행어사가 수시로 순행하여 부정을 적발하고 있으므로 목사와 판관은 항상 국왕의 감시하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암행어사 황준량이 성주에 들어와 목사, 판관의 관아와 관청을 조사하였으나 별 탈을 잡아내지 못하기도 하고(51/8/4), 어사 송찬은 관청의 술과 은구어를 조사하고 권농이 수합한 문서의 숫자를 대조하여 탈을 잡아내기도 하였다(51/10/23). 결국 관청의 細木과 술, 은구어 문제가 적발되어 다른 것은 불문에 부쳐졌으나 세목이 문제가 되어 목사 조희와 판관 김응상이 모두 파직되기도 하였다(51/11/9). 또 고령현감 강국로에 대해서는 감영 여종을 데리고 작폐를 하고 탐오와 불법을 저지른다고 파직을 계언하기도 하였다(52/9/7).

어사의 임무가 단지 지방 수령들을 감시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에서 토호나 호강을 적발하여 사변시키기도 하였다. 어사 김홍도는 봉사 벼슬을 지낸 백거추를 호강으로 지목하여 조사하였다(52/2/11).

사실상 목사와 판관의 중요 임무 중의 하나가 감사나 도사, 어사, 경차관의 支待이기도 하였다. 이들이 관아에 들르지 않더라도 境內를 지나게 되면 판관이나 목사가 지나가는 길에 나가서 待候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51/6/23, 52/1/7).

자료-② 〈御史〉에 관한 기사

1551년

○監軍御史黃俊良入州. ○黃御史送行道妓傳二字, 明日事.(4/10) 감군어사 황준량[17]

이 관아에 들어왔다. 황어사가 행도기생을 보내 문안(二字)을 전하였다. 내일의 일이다.

○安從坍以御史犯捉罷職, 以監司啓褒命還仍任云云.(5/22) 안종전이 어사의 범착으로 파직이 되었는데, 감사의 포장 계문으로 도로 잉임한다고 한다.

○二道往安偃, 御史黃俊良由他道歸, 昏空還云.(6/23) 판관이 안언진에 갔는데, 어사 황준량이 다른 길로 가서 저녁에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

○暗行御史黃俊良暮入州, 上二衙及官廳搜探, 不得捉頉, 只捧衙前等不納日用文書傍音云云, 曾捉安東·義城·大丘等官, 多捉而來云云.(8/4) 암행어사 황준량이 저녁에 관아에 들어왔다. 목사의 관아(상아)와 판관의 관아(이아) 및 관청을 조사하였으나 탈을 잡지 못하고 다만 아전들이 일용문서를 바치지 않았다는 다짐만 받았다고 한다. 일찍이 안동, 의성, 대구 등 관에서 많이 탈을 잡아내고 왔다고 한다.

○監軍御史金弘度午入州.(8/5) 감군어사 김홍도[18]가 낮에 관아에 들어왔다.

○黃·金二御史皆留州.(8/6) 황, 김 두 어사가 모두 관아에 머물렀다.

○監司李公·御史金·黃皆留州. 黃則欲發阻水云. 玄風朴瑞之犯捉至罷云.(8/7) 감사 이공[19]과 어사 김, 황이 모두 관아에 머물다. 어사 황은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물에 갇혔고 현풍현감 박서지는 범착되어 파직되었다고 한다.

○牧伯書喩, 馬轎子可輸還, 御史宋贊捕捉官廳酒四瓮, 又搜銀口魚及勸農所持銀口魚收斂文字, 似不爲無事云云, 修答以慰之.(10/23) 목사가 편지로 알리기를, 말가마를 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어사 송찬[20]이 관청의 술 네 동이를 잡아내고 또 은구어 및 권농이 소지한 은구어 수렴 문서를 조사하여 무사할 것 같지 않다고 하였다. 답장을 써서 위로하였다.

○令道伴喩, 近甚阻奉, 夕可入敍云, 促食夕食, 垂暮入州衙, 牧伯公事未畢, 坐外待之, 久然後入見, 敎官鄭壽夫亦來, 二道查頓居昌人李公亦會, 二道昏乃會, 遂設酌敍話, 御史所捉酒以復酒庫收招, 似入罷律, 故六日間出往高靈待之云云, 令彥伊彈伽琴而歌之, 可聽也, 各再行酒, 牧伯復行二杯, 乃辭出還堂, 醉渴飮湯鼓琴, 疲困乃寢.(11/1) 목사가 사람을 시켜 알리기를 요즈음 매우 적조하였는데, 저녁에 들어와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저녁을 서둘러 먹고 어둠이 드리우자 관아에 들어갔다. 목사의 공무가 아직 끝나지 않아 바깥에 대기하다가 오랜 후에 들어가 보았다. 교관 정수부도 왔고 판관의 사돈인 거창 사람 이공도 모였다. 판관이 저녁에 모여서 드디어 술자리를 하고 이야기하였다. 어사가 잡아낸 술 문제는 주고(술 담당 아전)에게서 다시 공초를 받았는데 아마 파직율에 들어갈 것 같으니 6일경에 고령에 나가 대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언이에게 가야금을 연주하고 노래하게 하였는데, 들을 만하였다. 각자 두

(17) 황준량(1517~1563): 자는 仲擧, 호는 錦溪, 본관은 平海. 『錦溪集』이 있다. 뒤에 성주목사를 지냈다.

(18) 김홍도(1524~1557): 자는 重遠, 호는 萊峯, 南峯, 본관은 안동.

(19) 이때의 감사는 李夢亮(1499~1564, 자는 應明, 본관은 慶州, 시호는 定獻)이다.

(20) 송찬(1510~1601): 자는 治叔, 호는 西郊, 본관은 鎭川.

번 술을 돌리고 목사는 다시 두 잔을 돌렸다. 인사하고 집에 돌아오니 술에 취하여 갈증이 나서 더운 물을 마시고 거문고를 연주하였다. 피곤하여 잤다.

○夕聞兩城主皆罷官之奇, 暮入上衙見之, 御史啓以官廳細木二匹, 酒則不啓, 以此見罷云云, 二道亦會此, 唁之何益, 留鄕所等會此, 受官物矣, 令道將酒留別, 吾亦答行辭出, 別離太苦, 可恨也, 二道亦出, 復與二道歸二衙唁之, 吉謙亦入見, 吾先辭還.(11/9) 저녁에 들으니 두 성주[21]를 모두 파직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저녁에 목사의 관아에 들어가 보았다. 어사가 관청의 세목 두 필 문제를 계문하였고 술 문제는 계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파직되었다고 한다. 판관도 함께 모였는데, 욕을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유향소 등도 모여 관물을 인수하였다. 목사가 술로 작별을 하였고 나도 술을 따라 답하고 인사하고 나왔다. 이별은 매우 괴로운 것이니 한탄스럽다. 판관도 나와서 다시 판관과 함께 판관의 관아에 들어가 욕을 하였다. 길겸도 들어와 보았는데, 나는 먼저 인사하고 돌아왔다.

1552년

○金御史送空狀及木紙等物.(1/1) 김어사가 빈 장지와 목면, 종이 등을 보냈다.

○二道如八莒以過金御史行云.(1/7) 판관이 팔거에 갔는데, 김어사가 지나가기 때문이다.

○倚沈香來言, 監軍御史方抄啓, 此道豪强人白奉事復預事, 房妓言之, 可得救耶云云, 第爲書要緩, 則答曰明日見權容, 問京中之議緊否而爲之云云.(2/11) 의침향이 와서 말하기를, 감군어사가 지금 (호강을) 뽑아 계문하는데에, 경상도의 호강인으로 백봉사[22]가 들어있는데, 방기가 말하기를 구할 수 있는가 하였다. 다만 편지를 하여 늦추어주기를 요구하고 답하기를 '내일 권용을 보고 경중의 의논의 긴부를 봐가지고 하겠다'고 하였다. ○老成入州, 見金御史, 御史遺狀紙云, 牧使亦召見給紙云云, 暫時還出. 노성[23]이 관아에 들어가서 김어사를 보았는데, 김어사가 장지를 주었다고 한다. 목사도 불러보고 종이를 주었다고 한다. 잠시 후에 돌아나왔다.

○吳敬夫遺書問, 且陳見捉御史不得保云云.(3/24) 오경부[24]가 편지를 보내어 문안하고 어사에게 잡힌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監軍御史閔時中入州.(6/25) 감군어사 민시중[25]이 관아에 들어왔다.

○監司·都事·御史等登樓射革云.(6/28) 감사, 도사, 어사 등이 누대에 올라가 활을 쏘았다고 한다.

---

(21) 두 성주는 목사와 판관인데, 이 때의 목사는 曺禧이고, 판관은 金應祥이다.

(22) 白巨秋 혹은 白巨鰍.

(23) 노성은 이문건의 從孫인 李玄培의 兒名이다. 일기에는 老成 또는 天澤으로 나온다. 아버지인 李爛이 함경도 경흥으로 유배가 있어서 從祖인 이문건에게 와서 공부를 하였다. 후에 문과에 급제한 후 星州牧使, 東萊府使를 역임하였다. 어사인 김흥도는 노성의 가까운 외척으로 생각된다.

(24) 吳謙(1496~1582)의 字. 호는 知足庵 또는 錦陽, 본관은 羅州, 시호는 貞簡이다.

(25) 자는 中立, 본관은 驪州.

○御史往高靈云.(6/29) 어사가 고령에 갔다.

○新監軍御史宋賀入州.(8/21) 새 감군어사 송하가 관아에 들어왔다.

○災傷御史任鼐臣下道入州, 遣陪吏問去.(9/1) 재상어사 임내신[26]이 내려가다가 관아에 들어와 배리를 보내 문안하고 갔다.

○高靈員姜國老, 營婢率畜作弊貪汚不法事, 監軍御史閔時中啓本啓下云云, 孝甲入州見奇別來傳.(9/7) 고령현감 강국로가 감영 여종을 데리고 작폐하고 탐오불법한 일로 감군어사 민시중이 계본을 올려 결재(계하)를 받았다고 한다. 효갑[27]이 관아에 들어가 기별을 보고 전해주었다.

○二道自花園夜還云, 御史任公午過花園云云.(9/14) 판관이 화원에서 밤에 돌아왔다고 한다. 어사 임공이 낮에 화원을 지나갔다고 한다.

○監軍御史宋賀夜入州云.(12/9) 감군어사 송하가 밤에 관아에 들어왔다고 한다.

○女妓叔之來傳監軍御史曰知有妻邊姻戚, 勢未訪尋云云, 不知誰壻也.(12/18) 기생 숙지가 와서 전하기를 감군어사가 "처변에 인척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형세상 찾아보지 못한다"고 했다고 한다. 누구의 사위인지 모르겠다.

다음 〈ⓑ와 ⓒ의 관계〉를 보자. 이 과정에서 재지사족과 수령의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고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국가권력의 재지사회에까지의 강력한 집행은 국가의 공식적인 명령집행 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재지품관들의 조직인 유향소와 재지출신 재경관인들의 조직인 경재소는 하나의 또다른 향촌지배의 라인이다.

예컨대 명종 9년에 사간원에서는 성주목사와 판관을 동시에 탄핵하여 파직시키고 있다.[28] 그 이유는 星州牧使 羅士愃이 "동향 사람과 일가붙이들을 많이 모아들여 여러 가지로 폐를 끼치고, 또한 判官과 함께 工匠들을 分占하여 私用을 만들어 대게 하고 있고", 판관 崔汝舟는 "官廳의 온갖 貢賦와 雜物을 감독하여 수납할 때 부과한 것의 5~6배가 되지 않으면 수납하지 않고 기름이나 꿀 따위는 되[升]나 말[斗] 밑에 구멍을 뚫어 한껏 새도록 한 다음에야 계량하므로 한 고을 백성의 원망하고 괴로와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합니다. 성정 또한 거만해서 사환과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날마다 서로 해치려고 모함하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성주목사와 판관은 동시에 파직이 되고 마는데, 이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은 감사나 어사에 의해 고

(26) 임내신(1512~?): 자는 調元, 호는 漁隱, 본관은 豊川.

(27) 김효갑: 이문건의 처조카.

(28) 『明宗實錄』 卷16, 명종 9年 1月 甲辰條.

발된 것이 아니라 중앙관의 탄핵에 의한 것이다. 이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간원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마도 경재소-유향소 라인에 의한 이른바 '風聞彈劾'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가 사족지배체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경재소-유향소 라인의 지배체제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지배체제는 17세기 초두에 경재소의 혁파로 재지엘리트의 힘은 약화되게 되고, 재지엘리트들의 중앙관계와의 연결이나 재지출신 관료가 드물게 되었을 때, 더이상 전통적인 사족지배체제를 존속시킬 수가 없게 된다. 조선후기의 사족지배체제는 크게 사족이 향임을 맡아 일원적인 사족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남형(안동형), 사족에서 향족이 분화되어(이른바 '儒鄕分岐') 사족의 향촌조직(사마소, 직월안 조직 등)과 향족의 향임조직으로 이원화된 호서호남형(남원형), 원래부터 사족이 형성되지 않아 향족이 사족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서북형의 유형적 파악이 필요하다.

성주지방의 재지사족들은 퇴직 관료, 생원·진사, 좌수·별감 등 품관, 기타 유생층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이들 사이에도 각각 層位를 이루며, 같이 모임을 가질 때도 있고 별도로 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목사의 명절 設酌에 사마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고(51/3/3), 離任하는 목사의 餞別 행사를 사마소, 유향소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유향소는 승려에 대한 감독, 승군의 초정, 군역의 징발 등의 업무, 공공사업에 인력의 동원, 환곡의 분배 등 제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를 그들은 行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목사와 판관 모두 空官이 되었을 때에는 유향소가 수령의 권한을 대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鄕射禮, 鄕飮酒禮 등 燕飮을 통하여 이들 재지사족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관에 협조를 하기도 하고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성주 在地社會의 권력관계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향리층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는 수령의 手下機構로서 수령에 의해서만 권력이 보장되는 것이지만, 수령도 함부로 그들 사회의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종 33년 星州史庫 화재사건은 성주판관을 모해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29]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여 재지사회의 권력관계에 있어서 ⓑ와 ⓒ의 관계는 협조 관계 또는 유착 관계에 있을 경우가 많았다고 보여진다. 『묵재일기』에 나타난 유향소 관련 기사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③ 〈留鄕所〉에 관한 기사

1551년

○別監宋應奎·李榮光, 夕來見, 鄕所之任多難處云云, 久坐乃去.(1/1) 별감 송응규, 이영광이 저녁에 와서 보고 향소의 임무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오래 앉아있다가 갔다.

○留鄕所前, 告川防須連築前川, 連于呂安家前, 則如此事亦已議之云云, 姜季同等來告囑圖故也.(1/26) 유향소에 고하여 꼭 천방을 앞내까지 이어서 여안[30]의 집 앞까지 이어달라고 하니 이런 일은 이미 의논했다고 하였다. 강계동이 와서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鄕所前請出汲水路, 則都色李淵防遮云, 招淵免笠問之, 則畢築後可出云云.(2/5) 향소에 급수로를 내달라고 요청하니 도색 이연이 막는다고 해서 연을 불러 향역을 면하려고 하느냐고(면립을 물으니) 다 쌓은 후에 낼 수 있다고 하였다.

○二道迎牧使之來, 早出楊亭, 令道宿海印, 午到楊亭, 會侍郎及留鄕所, 夕還州.(2/18) 판관이 목사가 오는 것을 맞이하려 양정에 일찍 나갔다. 목사가 해인사에서 묵고 낮에 양정에 도착하여 판관과 유향소를 만난 후 저녁에 관아에 돌아왔다.

○鄕所會南亭, 看審漆木場近處造家人, 令撤去云, 方實母來請送言緩毁云, 伴人告之.(4/22) 향소가 남정에서 만나 칠목장 근처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간심하고 철거하게 하였다고 한다. 방실의 어미가 와서 천천히 훼철하게 해달라고 청하여 사람을 시켜 고하였다.

○夕聞兩城主皆罷官之奇, 暮入上衙見之, 御史啓以官廳細木二匹, 酒則不啓, 以此見罷云云, 二道亦會此, 晤之何益, 留鄕所等會此, 受官物矣, 令道將酒留別, 吾亦答行辭出, 別離太苦, 可恨也, 二道亦出, 復與二道歸二衙晤之, 吉謙亦入見, 吾先辭還.(11/9) *어사 자료와 중복

○留鄕所·司馬所及品官等設餞于上衙.(11/10) 유향소, 사마소 및 품관들이 목사의 관아에 전별연을 차렸다.

○留鄕所僉位送黃肉·蜂家, 修謝狀.(11/21) 유향소의 여러 임원이 쇠고기, 벌집을 보내서 사례장을 썼다.

○吹笛介來納冬瓜, 求囑留鄕所前休督贖木事, 書付之.(11/21) 취적개가 동아를 납부하고 유향소에 속목을 독촉하지 말도록 청해달라고 하여 편지를 써주었다.

---

(29) 『中宗實錄』 卷89, 중종 33年 11月 癸未條 및 12月 乙巳條 참조.

(30) 여안은 향리 신분으로 이문건의 일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留鄕所與敎官開酌州館, 伴邀之, 以合藥辭之.(11/25) 유향소와 교관이 관아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사람을 시켜 초청을 하였다. 약을 만든다고 사양하였다.

1552년

○留鄕所座首姜德元・別監宋應奎・李榮光・裵振綱等, 朝到, 見之卽去.(1/1) 유향소의 좌수 강덕원, 별감 송응규, 이영광, 배진강 등이 아침에 와서 보고 바로 갔다.

○早飯後道信辭去, 給資米一斗・普明午後還來言, 維那僧多作弊, 送言鄕所議改云, 令呂安將辭, 告宋別監前, 則當議遞云云, 又云斗干莫松將爲人所圖奪, 請告令道云云.(1/7) *뒤의 干 자료와 중복.

○李而晦來見, 與着棋, 權容・柳景深等到州, 見牧使辭之, 午後到此共話, 李泰然・尹混・朴鵬擧亦隨來, 司馬所・留鄕所等看望, 權・柳兩客設宴於趙平家園, 兩公與生員等先赴, 吾亦赴邀. 張猴射之, 吾亦射, 不曾習射, 病臂尤困, 只射五巡先止焉, 各行酒, 權容先去, 吾亦執盃餞送, 日昏吾亦出, 由曹孫母家籬而行到下家, 水飯, 見兒等, 夜上堂以宿, 醉多飮水.(2/21) 이이회가 와서 보고 함께 장기를 두었다. 권용[31]과 유경심[32] 등이 관아에 도착하여 목사를 보고 인사하고 와서 오후에 이곳에 도착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다. 이태연, 윤혼, 박붕거도 따라왔다. 사마소, 유향소등이 구경하고 권, 유 두 손님이 조평의 집 뜰에서 잔치를 벌였다. 두 사람과 생원 등이 먼저 가고 나도 초대를 받아 가서 과녁을 펴고 활을 쏘았다. 나도 쏘았으나 전에 활쏘기를 연습하지 않았고 아픈 팔뚝이 더욱 피곤하여 단지 다섯 차례를 쏘고 먼저 그쳤다. 각각 술을 돌리고 권용은 먼저 갔다. 나도 술잔을 잡고 전송하고 날이 저물어 나도 나왔다. 조손의 어미 집 울타리를 지나 아랫집에 도착하여 수반을 먹고 아이들을 보고 밤에 당에 올라와 잤다. 많이 취하여 물을 마셨다. ... ○宴所留鄕所, 以牛肉進呈, 客等分遺於我矣.(2/21) 연소의 유향소가 쇠고기를 올렸다. 객들(권용, 유경심)이 나에게 나누어준 것이다.

○連孫・亡乃等, 因李友膺先塋伐木事, 見告留鄕所治罪云, 請減笞云, 伴人說之, 則正卿答以當寬云云.(3/5) 연손, 망내 등이 이우응의 선영을 벌목한 일로 유향소에 고소당하여 치죄를 당한다고 매를 감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사람을 시켜 이야기하니 정경(별감 배진강)이 마땅히 관대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東亭子, 鄕所・司馬所等會射邀之, 食後赴之, 與姜僉使作耦以射, 今日氣不平安, 不能中矣, 尹混多中居魁, 會客多不可記也, 僉使亦衰力不多中, 午點心, 巡杯而飮之, 終日射, 復起舞, 僉使起舞, 吾亦舞焉, 日旣沒, 乃先出還家, 見兒等點心, 昏上堂以宿.(3/20) 동정자에서 향소와 사마소 등이 모여 활을 쏘며 초청하였다. 식사를 한 후에 가서 강첨사와 짝이 되어 활을 쏘았다. 오늘은 기가 불편해서 맞힐 수 없었다. 윤혼이 많이 맞혀 첫째를 하였다. 모인 손님이 많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첨사도 힘이 쇠하여 많이 맞힐 수가 없었다. 낮에 간식을 먹고 술잔을 돌려 먹었다. 종일 활을 쏘고

(31) 權常(1508~1589): 본은 안동, 字는 吉哉. 權應挺의 子.

(32) 유경심(1516~1571): 字는 太浩, 호는 龜村, 본관은 豐山. 『龜村集』이 있다.

다시 일어나 춤을 추었다. 나도 춤을 추었다. 날이 이미 저물어 먼저 나와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을 보고 간식을 먹은 후에 당에 올라와 잤다.

○洪述之行公于鄕所, 與宋別監來見去.(4/25) 홍술지가 향소에서 행공(공무를 봄)한다고 하며 송별감과 와서 보고 갔다.

○留鄕所共送白紙三卷, 卽分遣三妓.(6/21) 유향소에서 함께 백지 3권을 보내어 바로 세 기생에게 나누어 주었다.

○留鄕所皆見遞云.(7/3) 유향소가 모두 교체되었다고 한다.

○呂林鍾・朴堞・大鈞等來見, 今日會東亭子, 慰前等留鄕所云云, 大鈞・李友膺減本爲委官, 請減於牧伯云云, 已因友膺之請, 請改於城主, 不可更告事言之.(7/11) 여임종, 박지, 박대균 등이 와서 보고 오늘 동정자에서 모이는데, 전임 유향소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박대균이 이우응이 면제 받은 위관 자리에 위관이 되었는데, 목사에게 감해줄 것을 청해달라고 하였다. 이미 이우응의 청으로 목사에게 바꾸어달라고 청하였는데 다시 고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新鄕所宋世臣來見去.(7/16) 새 향소 송세신이 와서 보고 갔다.

○鄕所共送贖木三匹, 槐山從馬價云.(8/24) 향소에서 함께 속목 세 필을 보냈다. 괴산 종마가라고 한다.

○前日宋世臣言, 牧伯有屬公田, 可給留鄕所云云, 聞是爲簡于牧伯, 望以與民, 則只答以不知首末, 不可許上云云, 恨言之輕也.(10/22) 전날 송세신이 말하기를 목사가 속공전을 가지고 있는데, 유향소에 줄 수가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목사에게 편지를 하여 저에게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더니 다만 앞뒤를 모르겠으니 드릴 수 없다고 하였다. 말이 경솔한 것이 후회스럽다.

○金世紹來見, 率子宗建來示留鄕所點考處云云, 率而來矣, 少酌送之.(12/16) 김세소가 와서 보았다. 아들 종건이를 데리고 와서 유향소의 점고처를 보였다고 하며 데리고 왔다고 한다. 조금 술을 마시고 보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원・진사들은 사마소, 품관층은 유향소를 구성하여 수시로 官長(목사, 판관, 교수)들과 宴飮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만들어 갔다(51/4/22, 51/11/25, 52/3/20, 52/5/21). 사마소가 향교에서 판관과 함께 開酌을 한다든가(52/1/10), 鄕射禮 등에서 사마소, 유향소, 전현직 관료들이 교류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52/2/21). 宴飮에는 의례 妓樂이 뒤따랐고 射侯를 하기도 하였다.

일기상에 나타난 유향소의 임무를 정리하여 보면, 川防(51/1/26), 목사 待候(51/2/18), 贖木 징수(51/11/21, 52/8/24), 토지의 看審(51/4/22), 維那僧의 改替(52/1/7), 伐木 금지(52/3/5), 人丁 點考(52/12/16) 등 다양한 업무를 하

고 있는데, 유향소가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을 '行公'한다고 표현하여 (52/4/25) 유향소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이들은 목사의 支待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유배와 있는 유력인사인 이문건에 대해서는 歲時에 인사를 하고 歲儀를 드리며(51/1/1, 51/11/21, 52/1/1), 수시로 쇠고기나 벌집(꿀)·贖木·종이 등을 바치고 있고(52/6/21, 52/8/24), 屬公田에 대한 정보를 이문건에게 제공하여 그것을 점유하도록 거들기도 하였다(52/10/22). 이들은 목사와 판관이 동시에 파직된 후에는 공무를 인수하고 목사를 전별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였다(51/11/9, 51/11/10).

이처럼 유향소가 수령을 보좌하고 공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비하여, 생원·진사들의 모임인 사마소는 공무에는 관련이 없이 주로 會集과 宴飮을 통하여 수령이나 지역사회의 유력층과의 유대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였다. 즉 사마소가 城主의 명절 宴會에 참석하기도 하고(51/3/3), 목사가 출행할 때 전별을 하기도 하며(51/6/12), 향교에서 회집을 하기도 하고 (52/1/10), 유향소와 함께 私家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다(52/2/21). 이들은 南亭에서 강신연을 하기도 하고(52/4/24), 射猄를 하기도 하였다 (52/6/17). 목사나 판관도 때때로 여름철에는 남정에서 공무를 보기도 하였는데, 사마소는 주로 남정에서 會集을 한 반면, 유향소는 東亭에서 주로 회집하였다. 이는 사마소가 유향소보다는 보다 수령에 근접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또한 생원, 진사 몇 사람이 남정에 모여 이야기할 때에도 사마소에서 다담과 식사를 제공하였다(52/7/26). 이는 사마소에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되어 있거나 수령으로부터 貢賦를 징수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자료-④ 〈司馬所〉에 관한 기사

1551년

○午入上衙, 謁城主兩分, 司馬所李泰然·宋鉉·李景明等入參, 開亭居李麟壽亦共參, 柳希渚女夫云, 設名日酌, 各行酒, 吾亦行酒, 將蜜果送與孫女, 昏罷酌辭退, 卽還堂, 水飯而宿.(3/3) 낮에 목사의 관아에 들어가 성주 두 분을 알현하였다. 사마소의 이태연,[33] 송현,[34] 이경명 등이 참석하였다. 개령에 사는 이인수도 함께 참석하였는데,

(33) 이태연은 字가 靜中이고 그의 형인 浩然은 字 剛中이며 그의 아우인 自然은 字

유희저의 사위라고 한다. 명절의 술자리를 벌였는데, 각각 술을 돌리고 나도 술을 돌렸다. 밀과를 가지고 나와 손녀에게 보냈다. 저녁에 술자리를 파하고 사퇴하고 바로 당에 돌아와서 수반을 먹고 잤다.

○二道與留鄉・司馬等出餞令道于東安云.(6/12) 판관과 유향소, 사마소 등이 목사를 동안진에서 전별하였다.

○簡靜中問可迎老成, 發貴兒共榻與否, 授司馬所人往傳之.(9/24) 정중에게 편지를 하여 노성이를 맞이하여 귀댁의 아이와 함께 공부하게 할 수 있는가 물었다. 사마소 사람에게 주어서 전하게 하였다.

1552년

○鄭敎官午到言, 司馬所到校開酌, 可臨見云云, 諾而使送鞍馬, 卽去.(1/10) 정교관이 낮에 와서 말하기를, 사마소가 향교에 와서 술자리를 벌이는데 임석하실 수 있는가 하였다. 허락하였더니 안장얹은 말을 보내게 하였더니 바로 갔다. ○夕, 校人持馬來, 點心而往會于山亭, 司馬所李泰然・裵振綱・都凞胤・李凞明・景明等會到, 二道城主亦出臨, 遂開酌各行酒, 夜乃罷, 二道先出, 吾次出還堂, 渴飮蜜水而宿.(1/10) 저녁에 향교 사람이 말을 가지고 와서 간식을 먹고 산정에 가서 참석하였다. 사마소인 이태연, 도희윤, 이희명, 이경명 등이 모였고 판관도 임석하였다. 드디어 술자리를 벌이고 각각 술을 돌리고 밤에 끝냈다. 판관이 먼저 나가고 내가 다음에 나와서 당에 돌아왔다. 갈증이 나서 꿀물을 마시고 잤다.

○司馬所行講信宴于南亭上, 兩城主・鄭校官皆臨, 吾亦參飮, 兼觀德, 令道亦射, 生員會者靜中・正卿・天衢・如晦・浩源等也, 二道弟汝雨・妹夫尹等來參, 各行酒陳妓樂, 令道昏先還, 巨川次夜還, 吾亦還堂以宿.(4/24) 사마소가 남정에서 강신연을 하였다. 두 성주(목사와 판관), 정교관도 모두 임석하였고 나도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겸하여 활을 쏘았다(관덕). 목사도 쏘았다. 생원 중에 모인 자는 정중, 정경, 천구, 여회, 호원 등이다. 판관의 아우인 최여우, 매부 윤 등도 참석하였다. 각각 술을 돌리고 기악을 진설하였다. 목사가 저녁에 먼저 돌아가고, 판관인 거천이 다음에 밤에 돌아갔으며, 나도 당에 돌아와서 잤다.

○欲投司馬所宿而不果.(5/19) 사마소에 들러서 자려다가 하지 못하였다.

○食後, 上南亭子避暑, 適司馬所來會, 設酒肴射猴, 吾亦參之, 靜中・正卿・而晦・如晦・李俔等會話, 徵妓五名, 令歌之, 暮罷之而還.(6/17) 식후에 남정에 올라가 피서를 하였다. 마침 사마소의 모임이 있어서 술과 안주를 진설하고 활을 쏘았다. 나도 참

---

가 誠中이다. 모두 서울에서 낳는데, 이문건과 가까운 곳에서 살아 竹馬故友와 같았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인 秀塢公이 늦게 癸酉年의 司馬試에 이문건과 함께 합격하자 그들은 이문건이 先人과 同年이라고 보면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兄弟 모두 아들이 없는데 靜中만 아들이 하나 있다(『默齋集』 卷6 雜錄 「李進士」).

(34) 宋鉉은 鄕溪 宋希奎(1494~1558)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免新禮에 참석하였다가 고향 성주에 내려와 면신례의 후유증으로 한 달 만에 죽었다.

석하였는데, 정중, 정경, 이회, 여회, 이현 등이 모여 이야기를 하였다. 기생 5명을 불러서 노래를 하게 하고 저녁에 파하여 돌아왔다.

○李如晦來見言, 與靜中上亭叙話云云, 卽與登亭, 靜中來話, 呂胄男持梨實來見, 分啗之, 禹希平亦來話, 司馬所人供水飯, 暮不飽, 令吾家供水飯, 今日兩度水食亦數也, 告二道求妓生三口來歌, 歌不善也, 暮罷下.(7/26) 이여회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정중과 함께 정자에 올라가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바로 함께 정자에 올라가니 정중이 와서 이야기하고 여주남이 배를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었다. 우희평도 와서 이야기하고 사마소 사람이 수반을 제공하였다. 저녁에 배부르지 않아서 우리 집에 시켜서 수반을 제공하라고 하였다. 오늘은 두 번이나 물밥을 먹으니 이것도 운수이다. 판관에게 고하여 기생 3구를 구하여 와서 노래를 하게 하였는데, 노래를 잘하지 못하였다. 저녁에 파하여 내려왔다.

○校官壽夫別送儒生邀之曰, 司馬所·二道欲會臨, 可得來見否云云, 諾之, 因雨不更請.(8/7) 교관 정수부가 따로 유생을 보내어 초청하여 말하기를, 사마소와 판관이 모임에 참석하시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하여 허락하였다. 비로 다시 청하지는 않았다.

자료-⑤ 〈品官〉에 관한 기사

1552년

○差備員品官等七八人歷見去. (2/28) 차비원 품관 등 7~8인이 들렀다가 갔다.

○暮, 裵別監來見言, 明明日東亭之會, 以二道入州時, 使迎于此, 勢不可, 爲退行如何云云, 吾以東亭品官會集明明日, 白二道則答云此亦好矣云爾, 則若已告之, 則竝擧無妨, 不須退云, 乃去.(3/27) 저녁에 배별감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모레 동정에서의 모임을 판관이 관아에 들어올 때 이곳에서 맞이하려고 하니 형세상 불가하니 물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나는 동정에서 품관들이 모레 회집하는 것을 판관에게 아뢰니 이것도 좋다고 하였으니 만약 이미 고하였으면 함께 하는 것도 무방하고 꼭 물러서 할 필요는 없다고 하니, 갔다.

## 2) 국가권력과 민

국가권력과 민의 관계는 〈ⓑ와 ⓓ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16세기 중반 경상도 성주지방의 국가권력과 민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묵재일기』의 1551년 5월 11일조의 기사를 검토해보자.

細木矣人言, 不納木事因次知云云, 卽將二匹各四十尺者付子公偕矣人入官廳納之, 出尺文來, 付矣送之.

가는 목면 주비인(전세공물로 내는 세목면의 납부책임자)이 와서 말하기를 목면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囚次知(범죄를 저질러 그 죄가 해소될 때까지 옥에 가두는 일)를 한다고 한다. 바로 40자 되는 목면 2필을 子公(향리로서 이문건에게 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주비인과 함께 관청에 가서 납부하고 영수증(자문: 尺文)을 받아오게 하여 주비에게 주어 보냈다.

細木은 田稅貢物의 한 명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비인이 전세공물 명목의 세목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구속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청의 담당자와 잘 아는 관계에 있는 향리 신분의 子公과 목사 이상의 잠재적 권력자인 이문건의 힘으로 세목면을 납부하고 자문을 받아 석방을 하게 한다.

국가권력과 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軍役, 貢物(田稅貢物), 雜役 등 수취의 기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자. 중앙을 대표하는 수령에게 어떠한 권력들이 위임되고 재량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떠한 것들을 중앙에서 직접 장악하였는가? 수령의 하수기구들은 무엇인가? (鄕所, 監官)-鄕吏-勸農-里正-주비(矣, 統)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은 어디까지가 주민의 자율적인 조직이고 어디까지가 관의 하수조직인가?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사족(在京士族이든 在地士族이든)과 하민의 보호·의존 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戶의 구조=수취체제의 구조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당시의 국가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민들이 국가에 바치는 역은 매우 다양하였다. 唐의 租·庸·調 수취제도에 기본적 원칙을 둔 조선시대의 수취제도는 당시의 현실에 맞추어 매우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租에 해당하는 전세의 경우 그것은 수조권자에 대하여 수조의 극히 일부분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전세 이외에 庸, 調에 해당하는 雜役과 田稅貢物이 극히 다양하였다. 또한 壯丁에 대해서는 군역의 의무를 져야 하였다.

〈전세공물과 잡역〉

먼저 전세공물과 잡역을 어떻게 수취하였는가? 다시 우리의 기본 텍스트인 『묵재일기』를 통하여 살펴보자. 국가의 농민지배의 기초 단위는 주비였다. 주비는 '矣'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國字를 써서 표기하였고, 혹은

'統'이라고도 불리웠다.[35] 물론 중앙권력은 각 군현 단위로 수령을 파견하여 그 지역을 지배하였지만, 각 군현에는 그 하부에 面(勸農)-里(里正)의 구획이 있고 부역의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은 주비였다. 주비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단위로 하여 나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공물, 잡역, 환곡의 부과와 징수는 주비를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묵재일기』에는 判官이 주비기[矣記]를 이문건에게 양도함으로서 전세공물의 징수권을 양여한다든가(51/1/23), 열 새 綿紬를 바치고 주비기를 받아 온다든가(51/2/1), 權禮孫의 戶奴 연동의 布 주비를 개정해준다든가(51/2/30), 白木綿 2필의 주비기를 가지고 적촌에 가서 보리 몇 섬을 거두어 온다든가(51/5/7), 細木 주비인이 세목을 바치지 못하여 수차지를 당하자 이문건이 대신 자공을 시켜 세목을 납부하게 하고 尺文(주비기)을 받아 석방되게 한다든가(5/11), 성대 주비와 여순 주비의 紬太를 거둔다든가 하였다. 또한 팔거의 白木綿 주비인 張孟南은 무언가 추후의 청탁을 위하여 꿩을 놓고 갔다. 이외에도 안산호의 扇竹 주비, 八莒 北面 十升紬 주비, 生獐 주비 등등 명목은 다양하였다. 한편 환곡의 경우도 주비를 단위로 하여 분배되고 징수되었다.

자료-⑥ 〈矣=注非〉에 관한 기사

1551년

○二道圖送細木三匹矣記及黃肉.(1/23) 판관이 세목 3필의 주비기 및 쇠고기를 보냈다.

○二道前告圖納紬二匹受矣記來, 十升紬二匹也, 皆近處也.(2/1) 판관에게 고하여 면주 2필을 바치고 받았다는 주비기를 받아왔다. 열새 면주 2필이다. 모두 근처이다.

○奴延同還自花園, 權禮孫言妻族有爲書員者, 若除此充軍役, 則槐山畓可呈上云, 勢不易矣, 劫成言玄召史畓只六斗落云, 尤可憎也, 禮孫戶奴延同布矣請改定云云.(2/30) 종 연동이가 화원에서 돌아왔는데, 권예손이 말하기를 처족에 서원을 하는 자가 있는데, 만일 이(서원)를 면제하여 군역에 넣어주면 괴산의 논을 바칠 수 있다고 한다고 하였다. 형세가 쉽지 않다. 겁성이가 말하기를 현소사 이름의 논 6두락이라고 한

(35) 주비는 '矣'라고 썼는데, '주비'라고 읽었다. '夫' 자 위에 '厶' 표시를 하여 하나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왜 주비라고 읽는지는 알 수 없다. 환자를 분배하고 징수하는 경우에는 還上統 또는 還上矣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統'이 '矣'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다. 더욱 가증스럽다. 예손의 호노 연동의 포 주비를 개정해줄 것을 청한다고 한다.
○二道前簡請權禮孫戶奴延同布矣改定及招致劫成事, 則卽依施云云. 판관에게 편지를 하여 권예손 호노 연동의 포 주비를 개정해주고 겁성이를 불러줄 것을 청하니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付白木二匹矣記于子公, 使往狄村, 見丁金等, 約收麥石.(5/7) 백목면 2필의 주비기를 자공에게 주어서 적촌에 가서 정금 등을 보고 보리 몇 섬을 거두기로 약속하였다.
○細木矣人來言, 不納木事因次知云云, 卽將二匹各四十尺者付子公偕矣人入官廳納之, 出尺文來, 付矣送之.(5/11) 세목면 주비인이 와서 말하기를 목면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차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각각 40자 되는 2필 (세목면)을 가지고 자공에게 주어서 주비인과 함께 관청에 들어가서 바치게 하고 자문을 가지고 와서 주비에게 주어 보냈다.
○令貴孫·子公等收紬太, 性大矣先收十二斗本麥三十斗·租十七斗云.(6/3) 귀손, 자공 등에게 주태를 거두게 하였다. 성대 주비가 먼저 12두 값 보리 30두, 조 17두를 거두었다고 한다.
○貴孫·子公等往收呂純矣紬太, 貧不肯出, 只取麥十七斗來.(6/4) 귀손, 자공 등이 여순 주비의 주태를 거두는데, 가난해서 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고 단지 보리 17두만 거두어 왔다.
○八莒白木矣張孟男遺雉.(8/16) 팔거의 백목면 주비 장맹남이 꿩을 놓고 갔다.
○米還上矣人來收二斗五升去.(12/2) 미 환자 주비인이 와서 2두 5승을 거두어 갔다.
1552년
○安峯三寶智一來見, 請減安山戶扇竹矣禹恩石一條云云, 伴白二道前, 徐當減抹云云, 智一留宿吾傍.(1/16) 안봉사의 삼보승 지일이 와서 보고, 안산호의 선죽 주비 우은석에게서 1조를 감해달라고 청하였다. 판관에게 아뢰게 하니 마땅히 면제하게 말소하겠다고 한다. 지일이 내 옆에서 머물러 잤다.
○令呂安納紬二匹于州, 八莒北面十升紬二矣也.(4/4) 여안에게 면주 2필을 관아에 바치게 하였다. 팔거 북면 열새 면주 두 주비이다.
○金世紹來見言, 民目山行干徵生獐斂米, 戶內八九名, 不勝支當, 請二道減之云云, 卽簡二道前, 減韓孫矣卅名作文送來, 遂贈之, 共飯乃去.(5/3) 김세소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민목산행간이 산 노루를 징구하고 쌀을 거두는데, 호 내에 8-9명이나 되어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판관에게 청해서 감해주십시오" 하였다. 바로 판관에게 편지를 하니, 한손 주비 30명을 감해주는 공문(작문=질문)을 보내와서 그에게 주었다. 함께 밥을 먹고 갔다.

일기 자료에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문건이 관으로부터 전세공물에 대한 수세권을 양도 받았거나 대신 관아에 납부하므로서 중간의

차액을 남기는 부로커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세공물들에 대한 부과와 납부를 매개로 그 권리를 양여받고 부로커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잡역과 전세공물에 대한 부과가 거의 지방관에 위임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재량를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물론 잡역과 전세공물의 부과는 토지를 단위로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 예컨대 성주판관 崔汝舟는 "官廳의 온갖 貢賦와 雜物을 감독하여 수납할 때 부과한 것의 5~6배가 되지 않으면 수납하지 않고 기름이나 꿀 따위는 되[升]나 말[斗] 밑에 구멍을 뚫어 한껏 새도록 한 다음에야 계량하므로 한 고을 백성의 원망하고 괴로와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할 정도였다.(36)

〈군역〉

그러나 군역의 경우는 일반 잡역이나 전세공물처럼 수령이나 유향소가 향촌 자체에서 전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군역의 抄出과 부담은 재지지배층의 자율적인 질서에 따라, 유향소에서 관여하고 책임을 졌으며, 관의 인준이 필요하긴 하였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인 軍籍敬差官이나 軍籍御史였다. 『묵재일기』의 1551년 6월 20일조의 다음 구절은 그러한 사정을 잘 말해준다.

李春陽來見言, 姪爲人望定軍保. 欲得二道作業儒關字于仁同官, 則可緩云云. 辭以前既蒙不可之報, 今不能再白事. 共嘗白酒去.

이춘양(이춘양은 성주이씨로 이문건과 同姓이다)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조카가 軍保(봉족 또는 보인)에 당정되었는데, 판관[二道]가 業儒(아직 하나의 직역으로 정착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나 유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향교에 예속되어 학업을 하는 職役으로는 校生과 童蒙이 있으므로 교생이나 동몽 보다는 많은 나이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하는 공문(동등 이상의 관에 보내는 공문: 關文)을 인동관에 보낼 수 있다면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전에 이미 불가하다는 대답이 있어서 이제 다시 아뢸 수 없다. 함께 백주를 먹고 갔다.

조선전기의 군역은 후기와는 달리 사족들 중에서도 군정이나 군보에 차출

(36) 『明宗實錄』 卷16, 명종 9年 1月 甲辰條.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군역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벼슬을 하거나 考講에 합격하여 유생이나 교생의 자격을 유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헐역에 소속되는 수밖에 없었다.

이문건과 동성인 이춘양은 조카가 군보로 망정되어 인근관인 인동의 업유로 되어 군보를 면제받을려고 시도하였다(51/6/20). 이훈경은 대구향교에 付籍하여 교생이 되어 군역에 추쇄되는 것을 면하였다(92/10/15, 52/10/26). 또 교생이라 하더라도 석전제에 불참하면 징벌로 정군되었고(51/8/24, 51/9/20), 代講하다가 발각되어 두 사람 모두 羅匠으로 충정되었다가 水軍으로 징벌되는 경우도 보인다(52/12/19, 52/12/20).

군역의 문제에 대하여 이문건은 많은 청탁을 받았으나, 전세공물이나 잡역과는 달리 대부분 그들의 청탁을 들어줄 수 없었으며 스스로도 그 일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52/10/20, 52/11/7, 52/12/6). 군역은 바로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군역에서 면제 받으려면, 儒案이나 校籍에 들어 있어야 하였다.

자료-⑦ 〈軍役〉에 관한 기사

1551년

○李春陽來見言, 姪爲人望定軍保, 欲得二道作業儒關字于仁同官, 則可緩云云, 辭以前旣蒙不可之報, 今不能再白事, 共嘗白酒去.(6/20) 이춘양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조카가 다른 사람의 군보로 망정되었는데, 판관이 업유라는 관문을 만들어서 인동관에 보내면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전에 이미 안된다는 대답이 있어서 지금 다시 아뢰는 것이 어렵다는 것으로 거절을 하였다. 함께 백주를 맛보고 갔다.

○二道問軍士越點事曾叩之矣, 名字示之, 卽示權禮孫, 則當敎兵房云云.(7/13) 판관이 군사를 월점(점고를 면제해주는 것)하는 것을 전에 부탁하셨는데 명자를 알려달라고 하여 바로 권예손이라고 하니 마땅히 병방에게 지시하겠다고 하였다.

○李暄來見, 校生釋奠祭不參, 州方定軍云, 請牧伯解減云云, 畏厭不從而辭之.(8/24) 이훤이 와서 보았다. 교생이 석전제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에서 정군하려고 하는데 목백에게 청하여 풀어달라고 하였다. 싫어할까 두려워 따르지 않고 사양하였다.

○權績來見言, 子應龍鄕校大祭不參, 罰定步兵正軍, 差使臨督, 欲定保人出價稅事, 乞簡求云云, 不得已簡達牧令前, 答曰如示, 頃之又伴人報之曰, 應龍有病云, 特不定罰云云, 績也喜極矣, 共點心辭去.(9/20) 권적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아들 응룡이가 향교 대제에 참석하지 않아서 벌로 보병정군에 정해졌는데 차사가 와서 독촉합니다. 보인으로 정하고 가세를 내려고 하니 편지를 하여 구해주십시오" 하였다. 부득이

목사 영공에게 편지를 하여 말하니, 바라는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조금 있다가 또 사람을 시켜서 대답하기를 "응룡이 병이 있다고 하니 특별히 벌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권적이 매우 기뻐하였다. 함께 점심을 하고 인사하고 갔다.

○李瑄來言, 白活于牧使, 已立當番, 請除軍役, 則逐之, 復召敎抹云云.(10/7) 이선이 와서 말하기를 목사에게 발괄을 내어, 이미 당번을 하였으니 청컨대 군역을 면제해 달라고 하니 쫓아내더니 다시 불러서 말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1552년

○李勳卿持雉二·鳩一來遺, 請丐山陳鷹于州官云, 又請所知告軍保督現者, 告城主緩督云, 不知牧使言之, 失火燒幕云, 少酌以送.(2/1) 이훈경이 꿩 2마리, 비둘기 1마리를 가져와서 청하기를 주관에 개산의 진응(묵은 매?)을 청해달라고 한다. 또 청하기를 아는 사람이 군보로 독현을 당하고 있는데, 성주에게 고하여 늦추어 달라고 하였다. 목사를 모른다고 말하였다. 불을 내서 막을 태웠다고 한다. 조금 술을 마시고 보냈다.

○李春長來見, 要其女夫充軍保時, 圖勿定絶戶云云, 酌送之.(2/11) 이춘장이 와서 보고 그의 사위를 군보에 충정할 때, 절호로 정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술을 마시고 보냈다.

○李勳卿來遺菁根, 欲免推刷爲軍云云, 酌酒送之.(10/15) 이훈경이 무를 가져와서 추쇄 당하여 군이 되는 것을 면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술을 마시고 보냈다.

○李春長·春陽·翼卿等來見, 皆欲有所圖於軍籍間, 非吾所及也.(10/20) 이춘장, 이춘양, 이익경 등이 와서 보았다. 모두 군적에 관해서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李勳卿來求大丘了簡, 欲圖娶居大丘付校讀書關子, 以免軍役云, 卽書子溫前狀, 付傳, 遺一雉去, 翼卿來見小酌.(10/26) 이훈경이 와서 대구관에 가는 편지를 구하였다. 대구에 처가살이를 하며 향교에 적을 두고 독서를 한다고 하는 관문을 보내 군역을 면하려고 한다고 한다. 바로 (심)자온에게 편지를 써서 주어 전하게 하였다. 이익경이 와서 보고 조금 술을 마셨다.

○白麟祥來見, 少酌送之, 欲庇其子軍役云, 吾何能也.(11/7) 백인상이 와서 보고 조금 술을 마시고 보냈다. 그의 아들의 군역을 막으려고 한다고 한다. 내가 어찌 가능하겠는가!

○李友膺參詳軍目之事, 請勿升正, 郭致農則當圖云云, 季孫子也.(11/26) 이우응(당시 유향소?)이 군목을 참상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정군으로 올리지 말라고 하니, 곽치농은 해보겠다고 한다. 곽계손의 아들이다.

○李春陽來遺栗與雀, 欲請城主前, 以其兩子書於儒案免充軍云, 勢難辭送.(12/6) 이춘양이 와서 밤과 참새를 놓고 성주에게 그의 두 아들을 유안에 써넣어 군역에 충정되는 것을 면케 해달라고 하였다. 형세가 어려워서 사양하고 보냈다.

○李春陽復來, 請其子勿充軍云云, 拒之.(12/11) 이춘양이 다시 와서 그의 아들을 충

군시키지 말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거절하였다.

○李德沃來言, 前日考講差使員到高靈時, 爲同壻入代講現捉, 傳請差員前不報事, 得圖, 而軍籍敬差官入高靈問曰, 儒生不通者幾人, 則色書員對曰不通者十, 代講者一也, 一者吾也反出於此不意如是也, 敬差官令同壻爲羅匠於高靈, 終定水軍, 通關星州以某爲羅匠終定軍云云, 牧使推捉入來, 請勿逐日立役事, 告圖云云, 卽去.(12/19) 이덕옥이 와서 말하기를 전날 고강차사원이 고령에 도착하였을 때, 동서가 들어가서 대강을 하다가 잡혀 차사원에게 청하여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군적경차관이 고령에 들어와 묻기를 "유생으로 불통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 하여 담당 서원이 대답하기를 "불통자가 10명이고 대강한 자가 하나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라는 것이 나인데, 도리어 여기에서 나오니 뜻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경차관이 동서를 고령의 나장을 시켰고 끝내는 수군에 정하였고, 성주에 통관하여 아무개를 나장으로 하였다가 끝내는 정군한다고 하였습니다. 목사가 잡으로 왔는데, 청컨대 매일 입역시키지는 말아달라고 하고 바로 갔다.

○令道前簡請李惟明代講勿定軍, 則答云依示焉.(12/20) 영도에게 편지를 하여 이유명이 대강하였는데 충군하지 말아달라고 하니 말씀하신대로 하겠다고 답하였다.

군역 이외에 여러 가지 잡다한 力役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 그 대상자 또는 戶를 干이라고 불렀다. 八結軍, (山直)陷穽干, 紙砧屬水軍, 捉魚軍(魚軍, 捉魚干), 灘干, 弓弩干, 山行干, 銀魚干 등 '干' 또는 '軍'으로 불리는 잡역의 명목은 거의 10종에 달하였다.(자료-⑧ 참조) 干은 잘 알다시피 조선초기의 身良役賤 계층으로서 아래의 사례를 보면 거의 干과 軍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잡역에 당하는 일꾼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37) 그런데 잡역도 민의 破産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課徵이었다.

팔결군은 8결을 단위로 역역에 동원할 일군을 내는 의미로 생각되며, 함정간은 함정을 만들어 날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역 이를테면 산노루(生獐)를 공물로 납부하는 역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성주지방의 은어 공물과 관련해서는 성주의 읍지인 『京山志』에서도 그 공물 부담이 매우 컸고 그것을 폐지함으로써 백성들이 매우 편하게 생각하였다는 기사는 그러한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다.(38) 이러한 잡역들은 관에서 중앙 각사에 공물이나 진상을 납부하

(37) 身良役賤 계층에 대해서는 劉承源, 1973 「朝鮮初期의 '身良役賤'階層-稱干稱尺者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1집 참조.

(38) 伽川一帶爲小捉魚除役 洛江一帶爲大捉魚除役 每年伽川十夫(八結曰夫) 洛江十五夫輪定 而一夫小捉魚則六升 大捉魚則十六尾 小捉魚日供二夫 大捉魚日供一夫 循

기 위하여 관에서 自備하거나 민에서 준비하여 납부하게 하는 과정에서 定役戶에 부과하는 것인데,[39] 이것은 지방관이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관료를 지냈던 유력자 이문건으로서는 얼마든지 청탁을 통하여 면제를 받게 하거나 대신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斗干과 같은 경우는 말(斗)질, 되(升)질을 하급 향리의 역인데 공물의 계량과정에서 많은 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간의 역에서 서로 맡아하려고 하는 사정을 볼 수 있다(51/12/12~52/4/15). 실록의 星州 관련 기사에서 판관 최여주가 말과 되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원래 정하여진 것보다 4-5배를 더 징수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두간의 행패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료-⑧ 〈干·軍〉에 관한 기사

1551년

○宋彥章處簡告祖谷鐵金伊八結軍減役, 則當圖之云. 因崔山言, 如得減則當圖輸材木云故耳.(1/27) 송언장에게 편지를 하여, 조곡 철금이의 8결군의 역을 면제해달라고 하니 마땅히 해보겠다고 한다. 최산이 말이 만약 (8결군의 역)이 면제되면, 재목을 보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性輪來納柴九馱, 是爲減貢物之報也云, 輸來人饋酒送之, 僧則飯送. 輪又以山直檻穽壬細木納于工房, 子公共往納之.(2/15) 성륜이 땔감 아홉 바리를 바쳤다. 공물을 감해준 데 대한 보답이라고 하였다. 실어온 사람에게 술을 먹이어 보냈다. 중에게는 밥을 먹여 보냈다. 산직함정간 세목을 실어와 공방에 납부하였는데, 자공이 함께 가서 납부하였다.

○伽川龍壽來請勿定捉魚干事, 納柿貼.(2/17) 가천의 용수가 와서 착어간에 정하지 말도록 청해달라고 하면서 감 한 접을 바쳤다.

○令道前簡告白億除紙砧屬水軍事, 不肯答之, 三寶智一族屬云, 請白故白之, 又告白良私用船稅, 更徵安峰事, 事記于昨日, 又次昨日送詩韻, 兼錄訪梅一律, 奉呈.(2/25) 영도(목사)에게 편지를 하여 백억을 지침속 수군에세 면제해달라고 하니 답을 하지 않았다. 삼보승 지일의 족속이라고 한다. 또 백량이 사사로이 쓴 船稅를 다시 안봉사에서 징구하는 일을 고하였다. 이 일은 어제의 기록이다. 또 어제 보낸 시에 차운을 하고 겸하여 "매화를 찾아서"라는 시 한 수를 써서 올렸다.

---

環頻數 民甚苦之 盧景任減小捉魚二升 大捉魚二尾 而民猶苦之 故全減貢賦 宋輿周通融於一州 李之翼罷之 每夫捧一石租 以爲饌價 進上雉獐舊責於水陸軍 康復誠爲牧使 以爲上供之物 不宜取具於貧卒 移定貧夫(『京山志』卷3 叢談條)

(39) 貢納制에 대해서는 田川孝三, 1964 『李朝貢納制의 硏究』(東洋文庫) 참조.

○性輪來言, 雲谷穿干, 曾納稅木, 請減差云, 問工房則令道視事後可爲云云, 飯送之.(3/2) 성륜이 와서 말하기를 운곡의 함정간에 대해 이미 세목을 납부하였으니 바꾸어 달라고 하여 공방에 물어보니 목사가 공무를 살펴본 후에 할 수 있다고 하여 밥을 먹여 보냈다.

○權禮孫送遣佐飯醬, 且言所耕戶卵金伊川防二日干, 當曳船木, 作勿役文于徐守貞處, 依書付還報, 送素物.(3/18) 권예손이 좌반장을 보냈다. 또 말하기를 소경호인 난금이의 천방이일간이 선목을 끄는 것인데, 서수정에게 역사시키지 말라는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令道前求減禹錫母戶奴捉魚軍, 則移易似難云云.(4/2) 영도에게 우석의 모의 호노 착어군을 면제해달라고 하니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

○二道伴問之, 仍簡告大尺權氏所耕七結, 請減魚軍, 則報曰, 可告令道圖之云.(4/13) 판관이 사람을 시켜 문안하였다. 그 편에 편지를 하여 대척의 권씨 소경 7결에 대한 어군을 감해달라고 청하니 대답하기를 "영도에게 고하여 도모해 보겠다"고 하였다.

○二道回報, 大尺淡同戶白令道, 則可除魚軍云云.(4/16) 판관이 회보하기를 대척의 담동 호에 대해 영도에게 아뢰었더니, 어군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

○二道伴問淡同戶魚軍當除幾結云, 以八結對送.(4/18) 판관이 사람을 시켜 담동 호의 어군을 몇 결 면제해줄까 하고 묻기에, 8결이라고 대답하여 보냈다.

○大尺禹家送言曰, 得除捉魚而欲定灘干, 悶悶云云, 卽白二道敎勿定.(4/28) 대척의 우가가 말하기를 착어간에서 면제되어 탄간으로 정했으면 하고 걱정을 한다고 하였다. 바로 판관에게 아뢰어 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陳守同母納柴請曰, 守同往者屬宅受由之時, 有干鷄十五首, 抄出督納, 依悶云云.(6/13) 진수동의 어미가 땔감을 바치며 청하기를 수동이 저번에 당신 댁에 속하여 휴가를 받을 때, 간의 역이 있어서 닭 15마리를 독촉받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한다.

○普明所言裵熙眞田稅使及斗干奴莫松差定事, 作簡白二道, 則成差帖出送矣, 普明持給光輔, 光輔之子也僧以人事物來置去.(12/12) 보명이 말한 배희진의 전세사 및 종 막송을 두간에 차정하는 일을 편지를 하여 판관에게 아뢰니, 차첩을 만들어 보냈다. 보명이 광보에게 주니 보명의 아들이라는 중이 인사로 물건을 두고 갔다.

○雲谷檻穿干弓弩干有闕改差事, 前日安峯僧卓先來請, 故簡白二道, 請傳白令道成帖, 則初以爲改呈所志矣, 再白請伸之, 則乃成帖出送.(12/24) 운곡의 함정간, 궁노간이 궐액이 되어 개차하는 문제로 전날 안봉사의 중 탁선이 와서 청하였다. 판관에게 편지를 하여 아뢰어 목사에게 전하여 첩을 만들어 줄 것을 청하니 처음에는 개정하는 소지를 올리라고 하더니 다시 아뢰어 달라고 청하니 첩을 만들어 내보내주었다.

1552년

○早飯後道信辭去, 給資米一斗, 普明午後還來言, 維那僧多作弊, 送言鄕所議改云, 令

呂安將辭, 告宋別監前, 則當議遞云云, 又云斗干莫松將爲人所圖奪, 請告令道云云.(1/7) 조반 후에 도신이 인사하고 갔다. 행자미 한 말을 주었다. 보명이 오후에 다시 와서 말하기를 유나승이 작폐가 많아서 향소에 건의하여 개정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여안에게 시켜 송별감에게 글을 보냈더니 마땅히 의논하여 개체하겠다고 하였다. 또 두간 막성의 역을 장차 다른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니 목사에게 고하여 달라고 청하였다.

○以普明所請, 斗干莫松仍定事, 簡白令道.(1/8) 보명의 청으로 두간 막송이를 계속 그 역에 정하는 일을 목사에게 편지하여 아뢰었다.

○牧伯作莫松斗干差帖送來.(1/15) 목사가 막송이를 두간에 차정하는 첩을 만들어 보냈다.

○斗干莫松來言, 稅使熙眞以劣見遞改定云.(1/26) 두간 막송이가 와서 전세사 배희진이 일을 잘못하여 바뀌었다고 하였다.

○昨日田稅使裵龍來言, 斗干莫松不求偕往, 故閑年率去事, 已告官前云云, 牧伯因伴問其情, 以書白莫松不得往裵龍不率去也云云, 牧伯回報曰, 當治裵龍令率莫松云, 皆昨日事也.(2/17) 어제 전세사 배룡이 와서 말하기를 두간 막송이 함께 가고자 하지 않으므로 한년이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이미 관전에 고하였다고 하였다. 목사가 사람을 시켜 사정을 묻기에 편지로 막송이가 가지 못하고 배용이 데리고 가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 목사가 회보하기를 마땅히 배룡이를 징치하고 막송이를 데리고 가게 하겠다고 하였다. 모두 어제의 일이다.

○普明言上納使裵龍以閑年爲斗干, 黜送莫松, 莫松下來云云, 此奇詮告兩城主, 則斗干不必有也, 可除云云.(4/15) 보명이 상납사 배룡이 한년이를 두간으로 하고 막송이를 쫓아내서 막송이가 내려왔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 소식을 두 성주에게 알리니 두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없앴다고 하였다.

○金世紹來見言, 民目山行干徵生獐斂米, 戶內八九名, 不勝支當, 請二道減之云云, 卽簡二道前, 減韓孫矣卅名作文送來, 道贈之, 共飯乃去.(5/3) 김세소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민목산행간에서 산노루(생장) 공물가로 쌀을 거두는데, 1호 내에 8-9명이나 되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 판관에게 청하여 감하여 달라고 하였다. 바로 판관에게 편지를 하니, 한손 주비 30명을 감하는 질문(작문: 공문서)를 보내왔다.

○婢乭今族人銀魚干納請除, 白二道出尺遣之.(5/10) 여종 돌금의 족인의 은어간 공물을 면제해달라고 하여 판관에게 아뢰어 영수증(자문)을 내주었다.

○布色吏來言, 必伊詐人, 不可爲斗干云云, 吾復令子公進白, 請令必伊爲斗干, 則依行云云, 復送人言, 斗干欲不定云云.(6/5) 면포 담당 향리(포색리)가 와서 말하기를 필이는 거짓이 많은 사람이어서 두간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내가 다시 자공을 시켜 올라가 필이를 두간에 차정하도록 청하라고 아뢰도록 하니 지시한대로 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두간을 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溫之母來請, 必伊斗干更定事, 面囑二道云云, 爐也叱以打腮, 可笑.(6/15) 온지의 어

미가 와서 청하기를 필이를 두간에 다시 정하도록 판관을 직접 만나 청해달라고 하였다. (아들) 온이가 꾸짖고 뺨을 때렸다. 우습다.

○必伊斗干事, 復簡二道而圖定.(6/18) 필이를 두간으로 정하는 일을 다시 판관에게 편지를 하여 차정하기로 하였다.

○令道前簡以謝臨, 兼請仁孫族進孫頭目改差事, 彦孫等山行干生雉等事, 告白則頭目酌爲云, 生雉卽依減下爲文字出送.(10/8) 목사에게 임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편지를 쓰고 겸하여 인손의 족속인 진손의 두목의 역을 개차하고 말손 등의 산행간 역으로 내는 산꿩 등의 공물 등의 일을 감해주도록 청하니, 두목의 역은 적절히 처리하고 산꿩은 바로 면제해주는 공문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하였다. *하급향리의 역-두목

○北山屯畓打作監官前, 簡請差備人二名, 郭季孫·崔文等并四口勿抄干事, 聞以李別監爲簡, 答來則柳希祥也.(10/19) 북산의 둔전답을 타작하는 감관에게 편지하여 차비인 2명을 차출해주고 곽계손, 최문 등 모두 4구를 간의 역에 초출하지 말아줄 것을달라고 청하였다. 이별감이라고 듣고 편지를 하였는데, 답장을 보니 유희상이 별감이다.

○令道前簡除李遇買婢作紙, 又要出北山里山石還上干燒木尺文, 付崔文令收來.(12/24) 목사에게 편지하여 이우가 여종을 사는데 드는 수수료(作紙價)를 면제해달라고 하고 또 북산리의 산석이의 환자간 소목 자문을 내달라고 요청하여 최문에게 가져오게 하였다.

## 맺 음 말

이상 조선시기 '사족지배체제론' 등장의 이론적 배경과 한계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16세기 경상도 성주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사족지배체제론의 새로운 전망을 시도하여 보았다.

사족지배체제론은 내재적 발전론에 기반을 둔 80년대 이후의 향촌사회사 연구성과였다. 이제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당연히 사족지배체제론도 새로이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것을 일본의 중국사 연구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지역사회론'이나 '전제국가론' 등 다양한 이론들을 이해하면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근세의 國制, 즉 에도시대의 국가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후지이 죠지(藤井讓二)의 피라밋적 구조 속의 여러 개의 頂点論이라든가, 미즈모토 구니히코(水本邦彦)의

소유와 행정의 분리론 등이 그것이다. 요시다 노부유끼(吉田伸之)는 우리나라와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권력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회적 권력론'을 제기하고 있다.(40)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세의 국가의 성격, 즉 조선시대의 國制에 대해서는 거의 본격적인 검토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그냥 양반관료국가, 중앙집권국가, 王權·臣權論 등 산발적인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

사족지배체제론으로 요약할 수 있는 80년대 이후의 향촌사회를 대상으로 한 우리의 일정한 연구성과는 이제 발전론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론적 제약이나 중앙이라고 하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자유롭게 국가와 개별 인간이 살아가는 場인 지역에 대한 천착을 중심으로 조선시기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하나의 조그만 시도로 필자는 여기에서 최근에 발견되어 간행된 16세기 중반의 일기인 『묵재일기』를 통하여 16세기의 국가권력과 재지사족 세력 및 민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았다. 이 일기는 주로 16세기 중후반의 경상도 성주지방이 무대가 되어 있으므로 16세기의 성주지방을 소재로 하여 국가권력과 재지사족, 민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되었다.

그동안의 연구가 중앙의 국가권력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반하여 사족지배체제론은 재지사족들의 자율적 권력에 비중을 두고 전개되어 왔다. 『묵재일기』를 통하여 16세기 성주지방에 대한 검토 결과, 먼저 국가권력의 강고한 지방지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국가권력에 의존하면서도 길항관계를 가지는 재지세력들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는 찾아볼 수 있었다. 국가권력은 정기적인 감사·도사의 순행을 통하여 지방관들을 감시하고, 어사나 경차관을 통하여 감시와 중앙권력의 직접적인 집행을 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재지사족 세력은 수령에게 유향소·사마소를 통하여 공무를 집행하고 협조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불법 수령에 대하여는 경재소-유향소 라인을 통한 風聞彈劾 등으로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1551년, 1552년의

(40) 藤井讓二, 1994「17世紀의 日本-武家國家의 形成」『岩波講座 日本通史』12, 岩波書店. 水本邦彦, 1997「第9章 畿內·近國社會와 近世的 國制」『近世의 鄕村自治와 行政』東京大學出版會. 吉田伸之, 1996「社會的 權力論 노트」『近世의 社會的 權力-權威와 헤게모니』山川出版社.

경상도 성주지방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감사·도사·어사·경차관 등 중앙권력의 대행자가 직접 수령을 감시하기도 하고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는 왕권의 대행자인 수령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공물이나 잡역 등에 대한 재량권을 통하여 대동법이 시행된 17세기 이후보다 훨씬 큰 권력을 행사하였다.

재지사족 세력도 사마소와 유향소를 통하여 중앙권력과 유착관계 또는 길항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재지사족은 수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착을 통하여 자신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신들에 의존하여 있는 하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재지세력은 수령의 공무를 보조하고 空官時에는 수령의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였던 유향소, 생원·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유교적 교양이 있음을 인정받은 집단인 사마소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국가와 재지세력의 협력·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토호나 豪强으로 지목되어 변방에 徙民이 되는 등 제제를 받기도 하였다.

『묵재일기』를 통하여 16세기의 성주사회를 볼 때, 우리는 국가권력의 전제성을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지사족의 자율성과 권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과 관련된 전현직 관료와 재지사족, 수령과 재지사족의 유착을 통한 보호-의존관계와 공물, 잡역 등 관권의 침탈로부터 예하의 하민들을 보호하는 재지사족과 하민들의 보호-의존관계가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 :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사)

* 追記: 이 글은 1998년 11월 한국역사연구회 제61회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앞 부분 사족지배체제론에 대한 반성의 글은 향촌사회사 연구의 말석을 점하고 있는 필자의 자기 반성의 글이기도 하다. 발표회에서 김필동 교수는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개념규정이 너무 단순하고 자의적이며 글이 분절적임을 지적하였고, 오수창 교수는 발전론의 탈피와 대안에 대한 전망, 국가권력의 지나친 강조를 비판하였으며, 김성우 교수는 사족지배체제의 개념과 용어의 애매성, 사족지배체제의 전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였다(토론 요지는 『한국역사연구회회보』34 참조). 이러한 비판

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수용하면서도 시간과 지면 관계로 일단 여기에서는 원래의 논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약간의 수정과 보완만 하여 발표한다. 필자의 미숙하고 거친 글을 읽어준 토론자들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